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31조 [보호구의 제한적 사용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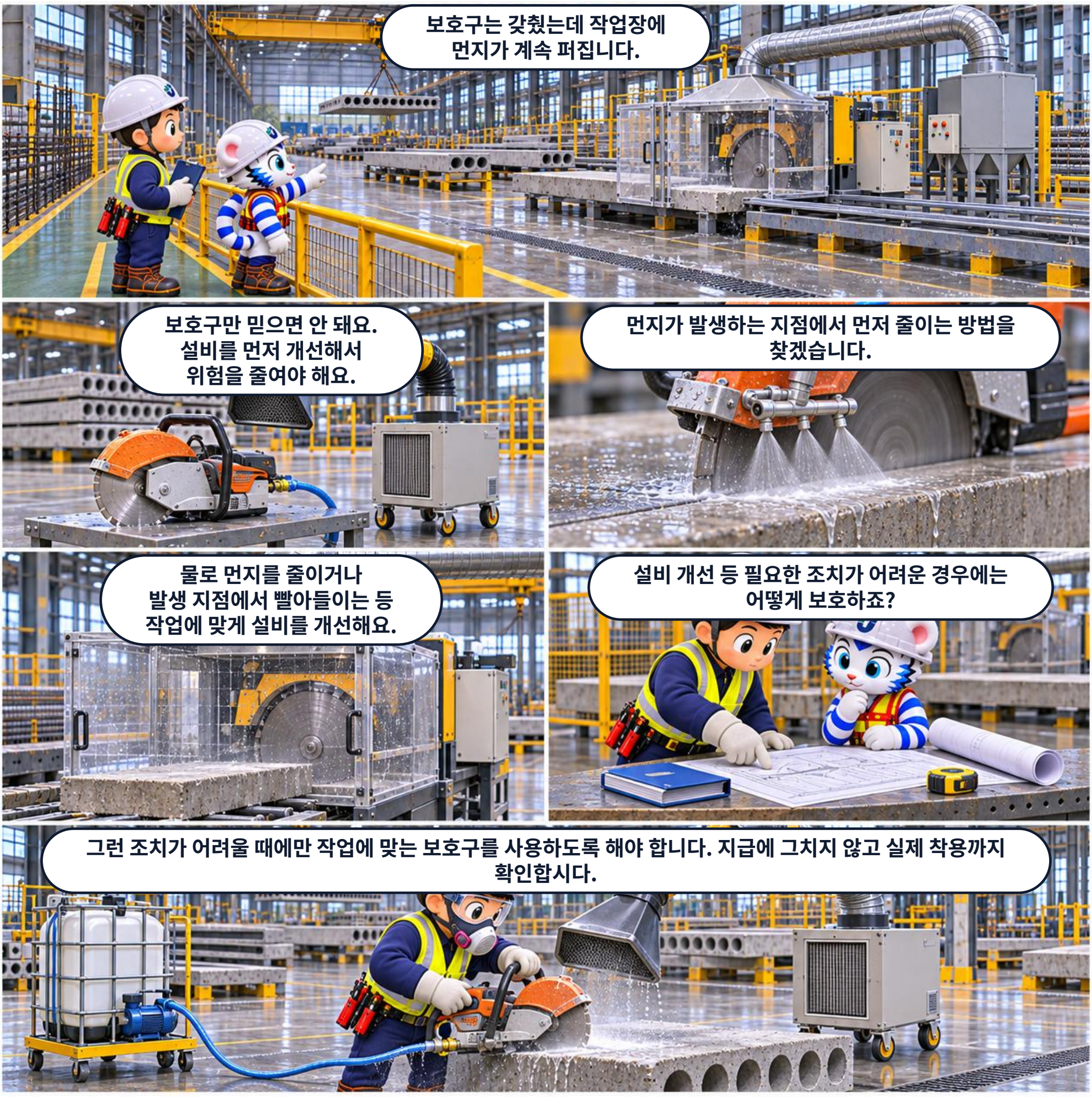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31조(보호구의 제한적 사용) · 조문 원문 전체

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 · 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**설비개선** 등 **필요한 조치**를 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**어려운 경우에만** 제한적으로 **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**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그림과 도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. 실제 작업 시 적용 법령·현장 조건·기구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세요.
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시행 2026. 3. 2. · 대조 2026. 10. 29.